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 자치행정위원회 -

1. 기획감사실
2. 투자통상실
3. 자치행정과
4. 주민지원과
5. 홍보체육과
6. 복지사업과
7. 세 정 과
8. 회 계 과
9. 보건위생과
10. 건강관리과
11. 문화체육시설관리소
12. 시립도서관
13. 읍·면·동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 1. 31. 현재

설명 주간성장	설명 제	기획	투자	자치	주민	봉	보통	지	시장	민원	보건	환경	문화	시립	읍면동
		기획실	통행료	예산과	사업과	체육과	체육과	사업과	시장과	민원과	보건과	관리과	체육소	도서관	
기	43	9	3	6	4	1	5	4	3	1	1	1	2	2	2
완료	22	4	-	-	-	1	3	4	3	1	1	1	1	2	2
추진중	21	5	3	6	4	-	2	-	-	-	-	-	1	-	-
시기 미도래	-	-	-	-	-	-	-	-	-	-	-	-	-	-	-
조치 불가	-	-	-	-	-	-	-	-	-	-	-	-	-	-	-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위원회운영 부적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실과</th><th>위 원 회 명</th><th>위원수</th><th>운영실적</th></tr> </thead> <tbody> <tr> <td>기획</td><td>규제개혁위원회</td><td>12</td><td>04-0회, 05-0회</td></tr> <tr> <td>기획</td><td>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td><td>9</td><td>04-0회, 05-0회</td></tr> <tr> <td>기획</td><td>공직자윤리위원회</td><td>5</td><td>04-0회, 05-0회</td></tr> </tbody> </table> <p>•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의를 1년동안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등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p>	실과	위 원 회 명	위원수	운영실적	기획	규제개혁위원회	12	04-0회, 05-0회	기획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9	04-0회, 05-0회	기획	공직자윤리위원회	5	04-0회, 05-0회	<p>01년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유사위원회와 통·폐합 또는 폐지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p>	<p>○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거 과도한 행정규제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및 제천시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운영하는 위원회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 및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위원회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위원회별 특성과 역할이 있는 법정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 목적과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보다 년 1회 이상은 개최도록 하겠음 	<p>“완결”</p>
실과	위 원 회 명	위원수	운영실적																
기획	규제개혁위원회	12	04-0회, 05-0회																
기획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9	04-0회, 05-0회																
기획	공직자윤리위원회	5	04-0회, 05-0회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5개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 5개항목중, 기준 재정수요액 반영사항 5개항목에서 1,068백만원의 패널티와 기준재정수입액 3개항목에서 817백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으며 인센티브는 2개 항목에 270백만원을 받는데 그치고 있는등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항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p>	<p>○ 200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에는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패널티는 최소화 되도록 각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람.</p>	<p>○ 경상적 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2003년도</th> <th>2004년도</th> <th>2005년도</th> <th>2006년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예산액</td> <td>26,822</td> <td>29,570</td> <td>24,445</td> <td>26,834</td> <td></td> </tr> <tr> <td>결산액</td> <td>25,645</td> <td>28,905</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경상경비 주요 증감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드민턴, 케이트볼장등 문화체육시설물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 - 2005년부터는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변경 (2004년도 복리후생비 9,097백만원) - 연금부담금등 법정경비 증가 - 기타 문화, 복지분야등 경상적 사업비 증가 <p>※ 2004년도 경상비 증가가 패널티의 주요인으로 판단</p> <p>○ 향후 경상경비 패널티 최소화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배정절감등 경상예산 절감계획 지속유지 (절감비목 확대 운영) - 신규 및 행사성 경상비의 최대한 억제기조 유지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비고	예산액	26,822	29,570	24,445	26,834		결산액	25,645	28,905	-	-		<p>“추진중”</p>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비고																
예산액	26,822	29,570	24,445	26,834																	
결산액	25,645	28,905	-	-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중기재정계획 의회보고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에도 지적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7.15한 자치단체별 단위사업조서를 입력하고 10. 15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고 10월말에서 11월까지 심의, 확정 및 의회보고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용자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보고는 계획작성후 의회에 제출 출석보고 또는 서면보고토록 하고 있음에도 2005. 11. 23. 예산안 제출시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당일인 '05. 11. 25까지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p>○ 지방재정계획의 체계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으로 운영되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수립 지방재정의 기틀로 활용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예산 확보와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함으로 단계별(일정별) 추진계획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투용자심사와 함께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함께 의회에 보고토록 하시기 바람.</p>	<p>○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 및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심의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p>	“완결”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및 장학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배낭여행은 유럽 1,500천원, 동남아 750천원을 지원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자치단체에서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1인당 500천원은 타 장학금에 비하여 약소함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p>○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을 배낭여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발기준을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한정할 필요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기능대학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p>	<p>○ 본 시책은 관학협력을 통한 지역인구 증가와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액은 장학생들의 자금심 고취와 면학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0만원으로 정했으나 예산조정과정에서 재검토하겠으며 • 또한 인구증가는 지역존립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타 지역 주민등록자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시책과 연계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 이전을 장학금 지급의 주요요건으로 운용 중이며, 관련 사항은 연차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기능대학 특별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예산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p>※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3개 대학과 협의를 거쳐 관학협력의 수법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추가경정예산 때 개선방안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	<p>“추진중”</p>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5개년 동안 투자되는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자료 작성 시 수감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p>○ 5개년동안 투자되는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자료 작성 시 수감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p>	<p>○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적정한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수감자료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음</p>	“완결”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마을 공동축사 신축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면은 노령인구가 28% 정도로 노인들이 쉽게 일 할 수 있도록 댐지원사업비 등을 통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춘 마을 공동축사를 신축하여 주시기 바람. 	<p>○ 댐지원사업비로 마을공동축 사 신축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수산면에 통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p>	<p>○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해 시행하는 댐 지원사업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실질적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증대나 댐주변의 노령화된 농촌사회 특성에 맞는 생활기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 수산면에서 건의된 현대화시설을 갖춘 마을 공동축사는 댐지원사업으로 가능함에 따라 <p>○ 댐지원사업을 발굴하는 해당면(수산면)에 위 사항을 통보하고 2006년도 댐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하였음</p>	완료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획감사실]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 청사주차장 확장요망(수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의 증가로 주차장이 협소하니 면사무소 옆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예산 또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가능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수산면에 통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 	“추진중”
○ 노트북 예산지원요망(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출장업무가 대부분인 방문보건팀에 노트북 및 뷔프로젝트가 부족하여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으니 예산지원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 예산에 반영가능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 도시계획변경 및 소방도로 개설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림초교뒤 골목길은 사도로서 행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재산권행사 및 생활불편 초래, 도시계획정비를 통한 소방도로개설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도로 개설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의림 명동에 통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투자통상실]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을 방문하는 외지인이나 관광객 및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약초시장을 홍보하는 안내표지판 부족 • 약초시장의 도매기능 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소매기능 활성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약초시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 세명대학교, 세명대 한방병원등과 연계하여 소매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약초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우리시민 조차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다고 보며, 이런 차원에서 외지관광객에게는 더욱더 접근하기에 미비하다는데 동의합니다. ○ 다만,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에서부터 약초시장을 접근할수 있도록 ①대형광고판 ②소형광고판 ③특히, 시장 자체 대형광고판 등 향후, 필요 예산등 확보를 거쳐 시장 상인회와 협의 최적 장소에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시장이던지 상관없이 도·소매기능이 가까이에서 연계기능을 갖출 때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리하고 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갖추게 되어 경쟁력 확보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현 약초시장은 근본적으로 도매기능에 기본을 두고 있으면서 활성화 기반을 상실하고 있어 작년 약초 시장 현대화사업(특구사업)으로 총 900백만원(시지원 600+자담300) 투입하여 경매장시설을 갖추어 도매시장으로써 활성화되도록 하였고 다만, 소매기능 문제는 시장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 중앙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도·소매기능 활성화 대책은 우리시, 시장상인회, 전통의약산업센터, 세명대학원연구소등 한방클러스터 차원에서 상호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적극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중"

지적·전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 제천약초의 명품화를 위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약초의 이력제 활성화 방안 강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초의 이력제 시행을 통한 제천 약초의 명성화 추진할수 있는 방안 강구 요망 ○ 약초시장내 한의원 유치 	<p>○ 기본적으로 WTO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개방이 현실적 필연의 사항이라면 이런 개방경제체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①생산주체 ②생산과정 등을 이력화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판매망 확대를 통한 소득창출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p> <p>○ 따라서, 현재 제천약초 이력화등을 2005. 4. 26 정부의 약초웰빙특구사업으로 지정받은 사항이며 또한 정부의 지역혁신태성화사업(RIS)내용중 황기를 중심으로 한 제천약초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2006사업으로 36농가 24.5ha을 지정하고 교육등을 통해 현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p> <p>결국, 제천약초웰빙특구지정의 성공여부는 특구 법이 지정한 5개 개별 법령을 완화도록 된바 ①약초의 이력관리 ②약초시장의 한의원유치(특구법상 10개소가 1개 한의사 채용으로 완화)등은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p>	“추진중”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의약산업센터 인건비 및 장비운영비 지원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구입비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장비 운영비 및 연구원 인건비가 부족함으로 전통의약 산업센터의 자립시까지는 시에서 예산 지원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예산지원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의약산업센타는 정부(산자부)의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으로써 「제천 약초의 고장」이라는 연관선상에서 총 235억원의 사업비를 「건축, 장비구입등」을 통해 2005. 11. 1제천 바이오밸리에서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본 센터는 사업초기 단계로써 (재)충북바이오진흥재단 소속으로 조직편제 모든 시설을 완비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연구원등 인력은 충원단계에 있는등 제반 연구능력은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 따라서, 장비운영비와 연구원인건비등은 정부 및 충북도와 충분히 협의 대책하되 최대한 상급기관에서 설립 동기나 취지상 지원대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 다만, 우리시에서도 연계선상에서 시자체 사업으로 한방특화도시가꾸기 2010프로젝트 대책차원에서 연구개발사업은 최대한 본센터에서 이행되도록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p>(2006지원사업비 : 기술개발분야4건 180백만원, RIS사업분야100백만원 등 총280백만원)</p>	“추진중”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자치행정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2005년도 지방교부세 <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내역></p>		<p>○ 200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에는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패널티는 최소화 되도록 각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람</p>		<p><지방공무원 정원운영> ○ 우리시 정원현황 : 현정원 996명 (표준정원 948명, 보정정원 976명) ○ 2003년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지속적인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상부기관의 정원승인으로 정원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임 ○ 2007년부터 시행 추진중인 「총액임금제」에 대비하여 재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p>		“추진중”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7">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th> </tr> <tr> <th>구분</th> <th>소계(A)</th> <th>지방공무원운영</th> <th>비정규상근인력운영</th> <th>경상경운영</th> <th>상수도요금현실화(면적)판리운영</th> <th>지방청사운영</th> </tr> </thead> <tbody> <tr> <td>산출내역</td> <td>△1,068</td> <td>△125</td> <td>△390</td> <td>△75</td> <td>△144</td> <td>△334</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6">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th> <th>인센티브총반영액(A-B)</th> </tr> <tr> <th>소계(B)</th> <th>지방세정수율</th> <th>주민세개인균등할</th> <th>과표현실화</th> <th>지방세체납액축소액</th> <th>지방세체납액축소액</th> <th></th> </tr> </thead> <tbody> <tr> <td>547</td> <td>△105</td> <td>△165</td> <td>16</td> <td>134</td> <td>667</td> <td>△1,61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5개항목과 기준재정 수입액 반영사항 5개 항목중, 기준재정수요액 반영 사항 5개항목에서 1,068백만원의 패널티와 기준재정수입액 3개 항목에서 817백만원의 패널티를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구분	소계(A)	지방공무원운영	비정규상근인력운영	경상경운영	상수도요금현실화(면적)판리운영	지방청사운영	산출내역	△1,068	△125	△390	△75	△144	△334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						인센티브총반영액(A-B)	소계(B)	지방세정수율	주민세개인균등할	과표현실화	지방세체납액축소액	지방세체납액축소액		547	△105	△165	16	134	667	△1,615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구분	소계(A)	지방공무원운영	비정규상근인력운영	경상경운영	상수도요금현실화(면적)판리운영	지방청사운영																																										
산출내역	△1,068	△125	△390	△75	△144	△334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						인센티브총반영액(A-B)																																										
소계(B)	지방세정수율	주민세개인균등할	과표현실화	지방세체납액축소액	지방세체납액축소액																																											
547	△105	△165	16	134	667	△1,615																																										

※ 참고자료

○ 도내 자치단체별 정원현황

(2005.12.31 현재)

시·군	보정정원	현정원	시·군	보정정원	현정원
청주시	1,663	1,718(+55)	영동군	588	628(+40)
충주시	1,272	1,281(+9)	증평군	294	319(+25)
제천시	976	996(+20)	진천군	488	545(+57)
청원군	716	785(+69)	괴산군	601	625(+24)
보은군	576	598(+22)	음성군	567	617(+50)
옥천군	552	611(+59)	단양군	517	557(+40)

지적 개의 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 치 결 과	비 고
<p>받았으며 인센티브는 2개 항목에 270백만원을 받는데 그치고 있는 등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항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p>		<p><비정규상근인력 운영></p> <p>○지방교부세 패널티 감소를 위하여 비정규 상근인력운영방침은 증원을 억제하고 자연 감소 등의 요인 발생시 정원을 감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6.2월 현재 전년도 대비 4명을 감축시켰으며, 안정적인 상근인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추진 중”
<p>○민간인 해외여행 대상자 선정 기준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해외여행은 자매결연 대상국 방문, 국제행사 참석, 선진지 견학등의 사유로 해외 여행을 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제천시의 홍보와 우호교류, 현지기업인과의 투자협의등을 통하여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인 해외 여행에 따른 명확한 대상자 선정기준 없이 담당부서 임의로 민간인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 하여 추진하고 있음 	<p>○민간인 해외여행에 따른 객관 적인대상자 선정기준 또는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p>	<p>○민간인들에 대한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 할 때에는 당해 여행목적에 부합되는 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민간인 해외여행 선정기준”을 2006년 3~4월중으로 제정 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p>	“추진 중”

지적·전의성	조례 요구 사항	조례 결의	비고
<p>○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위원과 위탁대상사무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처리지침에 의하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9명으로 구성하되 지방의회, 전문가,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하고 공무원과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하였으나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의에 적정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p>○ 관련 실무지침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람.</p>	<p>○ 수탁기관 선정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관리조례를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상정하여 개정 시행하고자 함</p>	<p>“추진중”</p>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월악산 약초 정보화 마을 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마을은 설치보다 활용이 중요하므로 운영 단체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p>○ 정보화마을 인터넷을 통하여 농특산품 우수판매자, 다량판매자 등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는 방안등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요망</p> <p>○ 월악산 약초 정보화 마을이 설치된 복지회관의 화장실이 동절기에는 단열이 되지 않아 결빙으로 사용이 불가함으로 단열벽 설치 또는 난방등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 동절기에도 사용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임.</p>	<p>○ 현재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가구는 하설산더덕작목반 이영식씨 한분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상계획은 무의미함.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자상거래 교육등을 적극 실시하여 여러 가구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2007년부터 우수판매자 또는 다량판매자에 대한 시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p> <p><추진내역></p> <p>○ 정보화마을의 조성 취지는 농촌 지역의 정보화 통해 도농간 정보격차해소와 정보이용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 등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p> <p>○ 정보화마을의 관리 주체는 정보화마을운영 위원회로서 상품판매 및 체험관광등을 개발 지역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나 현재 까지는 미흡한 실정임.</p>	"추진중"

지적·검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이에 따라 2005년 7월 정보화마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 송부 하였으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특별한 성과가 없어 2005년 12월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건국대학교 전자상거래 관련교수(안상돈)를 초빙하여 마을주민 대상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였고,</p> <p>○ 2006년에는 지역소득 향상을 위하여 마을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결함.(2006. 2.6 마을운영위원회 개최)</p> <p>○ 또한 시에서는, 2006. 2.10 ~ 2.19(10일간) 19:00 ~ 21:00(3시간) 작목반 및 정보화마을 회원을 대상으로 농특산물전자상거래 교육을 자매결연대학인 건국대학교 자연공학대 교수진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7,8월, 12월(농한기증)에도 교육을 실시 할 예정임.</p> <p>○ 복지회관 화장실을 동절기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덕산면사무소에서 철저히 관리도록 조치하였음</p>	“추진중”

지적 개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날로 증가하는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으니 인력을 충원하여 주시기 바람. 	<p>○ 인력진단등을 통하여 인력충원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p>	<p>○ 우리시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정원증원은 어려운 상태임</p> <p>○ 상반기중 인력진단 용역시 시 전체적으로 검토예정임</p> <p>○ 결원 1명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신규직원 배치 예정</p>	“추진중”
<p>○ 의병도서관 운영시 인력 지원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4월경 준공예정인 의병도서관은 현 인원으로 2개의 도서관 관리는 어려우니 인력을 보강하여 주기 바람 	<p>○ 인력진단등을 통하여 의병도서관 준공 운영시 인력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시립도서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p>	<p>○ 현재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인력지원은 어려우며 인력진단 용역 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력지원이 되도록 하겠음</p>	“추진중”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주민지원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덕산면 성내리 교량가설공사 추진 부적정</p> <p>• 덕산면 성내리에 가설중인 교량의 위치가 위,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가깝게 교량과의 거리가 너무 건설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항의성 민원이 발생되는 등 덕산면 성내리 교량가설공사 추진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음.</p>	<p>○ 인근 교량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인터넷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 불평불만이 발생되고 있는 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p>	<p>○ 덕산면 성내리 교량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결과 당초 원안대로 사업시행을 요청하고 있는바, 본 사업을 통하여 오지면의 자립기반시설 확충으로 향후 덕산면의 지역성장동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p>	추진중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주민지원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운면 샛방아다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 요망 • 2006년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 하였으나 미 반영된 사업으로 방학리 샛방아다리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요망 - 배수로 개거 L=500M(800×800), 150백만원 - 농로포장 L=300M, B=3M, 3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리 샛방아다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 가능여부 및 향후 계획등을 백운면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도 백운면 현안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미 반영됨에 따라, 향후 백운면과 재협의 및 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음 	추진중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주민지원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백운면 애련1리 마을안길 보완 요망</p> <p>• 2005년 6월에 준공된 애련1리 농로포장 공사 중 일부분은 주변 농경지보다 도로가 낮게 포장되어 있으며, 배수로 없이 농로가 포장되어 만원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재정비 요망.</p>	<p>○ 배수로 설치등을 통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p>	<p>○ 현장 확인결과 포장 일부 구간내 배수로 미설치로 주변농경지 유실 및 주민통행의 불편함이 예상되는바, 해당 백운면과 협의를 통하여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음</p>	추진중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주민지원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센터 강사 수당 현실화 •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이 월36만원 정도로 충주나 제천에서 출강하는 강사에게는 부족한 실정으로 별도의 교통비 지급등을 통하여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에 출강하는 강사에게는 교통수당 별도 지급등 다각 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 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와 유사한 충북도내 자치단체의 수당지급액등 전반적인 조사와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 부서와 협의 하여 반영여부를 검토 하겠음. 	추진중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홍보체육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 수산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관련사항 • 수산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내부의 경기장 라인선과 벽면과의 거리가 너무 좁게 설계되어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경기장을 이용하는 관람객 및 선수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향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시 여유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하시기 바람.	○ 2006년도 시행하는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여유공간이 확보 토록 실시설계 반영하여 관람객 및 선수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완결"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복지사업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위원회 운영 부적정 :</p> <p>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실적 없음</p> <p>•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위원 회의를 1년동안 단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등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p>	<p>○ 1년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 또는 폐지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p>	<p>○ 2005년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05. 12. 13(화) - 장 소 : 영상회의실 - 참석자 : 지방청소년위원 12명 - 내용 : 제천시 청소년육성 주요시책 및 발전방향 모색 - 향후계획 : 정례적인 회의 개최 	완결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복지사업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제천보훈회관건립 추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을 건립코자 청전동 505-14번지에 부지 295평, 연 건평 360평(지상 4층), 사업비 1,700백만원(국비7억, 도비4.5억, 시비 5.5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계획등에 일관성 없이 추진하므로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당초 업무보고에는 사업비 1,800백만원(국비 14억, 도비 3억, 자담 1억)으로 시비 부담 없이 계획을 추진코자 하였으며,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500백만원을 '06년에 700백만원, '07년에 800백만원으로 하는 등 계획의 일관성이 결여됨 	<p>○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비부담등을 고려하고 중장기 계획, 투융자심사 등 관련법규를 이행하여 계획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건립중인 보훈회관에 대해 부실공사 방지 대책과 본래의 목적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p>	<p>○ 제천보훈가족의 오랜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 추진 초기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각종 사안에 따른 예산확보 상황이 수시로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사업비 내역이 불가피하게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추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관련법규를 철저한 준용 시행도록 하겠음.</p> <p>○ 2005년 10월 보훈회관 공사발주 후 부실시공 방지와 본 공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시청 건축관련부서에 공사지도공무원 협조요청 및(복지사업과-24441 (05.11.25))공사 감리자(건축사사무소 내토)에 대해 수회에 걸쳐 철저한 공사감독에 의한 완벽시공을 촉구함. '06년 3월 공사재개 이후엔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 및 관리로 최상의 보훈회관이 건립이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p>	완결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복지사업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 자전거 거치대 설치 요망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으나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 분실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자전거 거치대 설치 요망	○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건설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대시설 설치 사업에 반영토록 협의 완료 -복지사업과-2889(2006. 2. 1)호 관련 -청소년문화의집 자전거 거치대 설치 협조 의뢰	추진중
○ 홀로노인 생일떡 전달사업 홀로노인 생일떡 전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으니 서예산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홀로 노인 생일떡 전달사업 예산이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통보하시기 바람	○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일날 떡을 제공,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수산면 만의 지원은 타읍면동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사항임	완료
○ 수산면 노인정 관리소 홀 수산면 노인정 벽면에 크레이 심하게 발생되어 있으니 보수 또는 노인정 신축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노인정 보수계획 또는 신축 계획등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폐적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2006년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반영하여 우선 지원 검토하겠음	추진중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세정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위원회운영 부적정</p> <table border="1" data-bbox="198 460 675 650"> <tr> <th>위원회명</th> <th>위원수</th> <th>운영실적</th> </tr> <tr> <td>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td> <td>7</td> <td>04년도 : 0회 05년도 : 0회</td> </tr> </table> <p>•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의를 1년 동안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등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p>	위원회명	위원수	운영실적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7	04년도 : 0회 05년도 : 0회	<p>01년 동안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 또는 폐지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p>	<p>○ 과세전적부심사는 남세자의 권리율 보호하는 사전적 구제절차로 '97.10. 1 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임</p> <p>○ 지방세 과세 예고통지 등을 받은 남세자가 적부심사를 청구시 → 과세전적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됨</p> <p>○ '04~'05년도 기간 중에는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었으나, 계속 존치가 필요하며, 남세자의 권리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과세예고 등 통지시 안내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음.</p> <p>※ 설치근거 : 지방세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p>	<p>“완결”</p>
위원회명	위원수	운영실적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7	04년도 : 0회 05년도 : 0회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세정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7">기준체정수입액 반영사항</th> </tr> <tr> <th>소계 (B)</th> <th>지방세 징수율</th> <th>주민세 개인 등 할 금</th> <th>과표 현실화</th> <th>경상세와 수입 확증</th> <th>지방세체 납액 축소 액</th> <th>인센티브 총반영액 (A-B)</th> </tr> </thead> <tbody> <tr> <td>547</td> <td>△ 105</td> <td>△ 165</td> <td>16</td> <td>134</td> <td>667</td> <td>△ 1,615</td> </tr> </tbody> </table>	기준체정수입액 반영사항							소계 (B)	지방세 징수율	주민세 개인 등 할 금	과표 현실화	경상세와 수입 확증	지방세체 납액 축소 액	인센티브 총반영액 (A-B)	547	△ 105	△ 165	16	134	667	△ 1,615	<p>○ 200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에는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패널티는 최소화 되도록 각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람.</p>	<p>○ 지방세 분야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증가 및 패널티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지방세(시세) 징수내역> (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년도별</th> <th>부과액</th> <th>징수액</th> <th>결손액</th> <th>미수액</th> <th>징수율</th> </tr> </thead> <tbody> <tr> <td>2003</td> <td>33,317</td> <td>29,298</td> <td>466</td> <td>3,553</td> <td>87.9</td> </tr> <tr> <td>2004</td> <td>39,607</td> <td>35,353</td> <td>447</td> <td>3,807</td> <td>89.3</td> </tr> <tr> <td>2005</td> <td>37,652</td> <td>32,963</td> <td>540</td> <td>4,149</td> <td>87.5</td> </tr> </tbody> </table> <p>* 2005년도분은 2006.1월말 기준 자료임 우주시 지방교부세 산정시 → 시세만 적용됨 ○ 지방세체납액 정리 「3.30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과표 현실화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년도별</th> <th>2002</th> <th>2003년</th> <th>2004년</th> <th>2005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현실화율</td> <td>35.99%</td> <td>38%</td> <td>41%</td> <td>50%</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까지 → 제천시과표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율이 결정됨 - 2005년도 부터는(전 자치단체가 동일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에 의거 적용비율이 명시되어 시행됨 - '06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씩 인상됨 <p>* 과표 현실화율 : 토지분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의 과표 산정시 → 공지지가 적용 비율임</p>	년도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2003	33,317	29,298	466	3,553	87.9	2004	39,607	35,353	447	3,807	89.3	2005	37,652	32,963	540	4,149	87.5	년도별	2002	2003년	2004년	2005년	비고	현실화율	35.99%	38%	41%	50%		<p>“완결”</p>
기준체정수입액 반영사항																																																												
소계 (B)	지방세 징수율	주민세 개인 등 할 금	과표 현실화	경상세와 수입 확증	지방세체 납액 축소 액	인센티브 총반영액 (A-B)																																																						
547	△ 105	△ 165	16	134	667	△ 1,615																																																						
년도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2003	33,317	29,298	466	3,553	87.9																																																							
2004	39,607	35,353	447	3,807	89.3																																																							
2005	37,652	32,963	540	4,149	87.5																																																							
년도별	2002	2003년	2004년	2005년	비고																																																							
현실화율	35.99%	38%	41%	50%																																																								



- 2006년도 -

지방세 체납액 정리 「3·30운동」 추진계획



자치 행정국

세 정 과

지방세 체납액 정리 3·30운동 추진 계획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2006년도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액 정리율을 높이고자 함.

I. 추진 목표

현년도 체납율 3% 이내,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 정리

2005.12월 말 부과 및 징수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목표액	부과액(A)	징수액(B)	체납액(C)	징수율 (B/A)
계	57,241	71,931	64,581	7,350	89.7%
도세	24,847	34,746	32,138	2,608	92.5%
시세	31,522	37,185	32,443	4,742	87.2%

연도별 동기대비 체납현황(12월 말)

(단위: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체납액	4,321	4,279	5,256	6,574	6,893
징수율	89.0%	90.9%	90.5%	89.2%	89.2%

II. 추진 방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계획 수립 운영
- 지방세 고액체납액정리 전담팀 운영 등 효율적인 징수대책 강구
-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강화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III. 추진내용

1. 효율적인 징수 추진체제 구축·운영

가. 지방세 체납액 발생 사전 예방 및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

- 각종 지방세 납기 내 납부홍보 강화
- 신고납부 세목 관련부서, 기관에 사전신고납부 안내
- 지방세 과세물건 최초발생지 지방세 납부안내 서한문 발송
-법무사, 부동산 중개사무소, 차량매매상사 등
- 자동이체 등 각종 납세편의 시책 제도 운영 강화

나. 소액체납액 읍·면·동 전 직원 징수협조 운영

- 기간 : 2006년 년 중
- 대상 : 균등할주민세 및 면허세 체납자
- 각 읍·면·동별 자체 징수 독려반 편성
- 중점 추진 사항
 - 체납자별 현장방문 징수활동 전개
 - 징수불능 체납자 결손처분 증빙자료확보 제출

다. 팀별 읍·면·동 담당지역편성운영

- 읍면동 책임 담당지역 편성
- 체납자 명부를 작성, 부서별로 배분
 - 고액 체납자(1백만원이상)는 체납관리팀에서 집중 관리

- 소액 체납자(백만원이하)는 팀별·지역별 안분
- 분담된 목표에 의하여 직원 개인별 목표 부여
 - 세목별·개인체납자별 분류 목표 제시
 - 체납리스트를 발췌하여 개인별 배분(월 1회)

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실적별 인센티브 부여

- 체납액 일제정리실적 분석 및 평가
 - 분기1회, 팀 담당지역별 체납정리현황 분석
 - 징수액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상황 등 정밀분석
 - 우수 수범사례, 부진사례 등 발표 활용
- 체납정리 유공 공무원 포상추천 및 징수포상금지급

2. 체납예방 및 징수관련 운영강화

가. 장기·상습체납자 체납처분, 행정제재 강화

- 신속한 재산압류처분에 의한 채권확보 철저
 - 체납액 30만원이상 체납자 매월독촉기간 경과 즉시압류
 - 실효성 있는 재산압류 : 부동산 외의 재산압류도 적극 추진
 - 압류재산의 공매 확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신속추진
 - 자체공매처분(부동산 이외) 실효성 제고
- 인·허가 등 관허사업 취소·제한요구
 - 년 3회이상 체납자 수시 제한대상자 발췌
 - 관련부서 통보 : 체납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 적극 활용(국세징수법 제7조의2)
 - 체납·결손처분액 각 500만원 이상자 등록 통보 철저
- 상습체납자 사법기관 고발(예고) 철저
 -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
⇒ 고발 예고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고, 자진납부 유도

-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지방세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재산 미압류 소액체납자 징수노력 강화
 - 소액체납자도 반드시 납부토록 납세홍보 및 징수활동 강화
- 직장인 체납자의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 활성화
 - 공무원·회사원 등 직장인체납자 명단 직장조회 및 납세독촉(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3.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

- 영치대상 체납차량
 - 매 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촉기간 경과 자동차
 - 장기 체납 자동차 추적 독려활동 및 영치
 - 미신고된 도난차량의 경우나 실제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공부가 미정리 된 경우 등 사실상 미 소유·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 사실상 폐차 차량 정리 지침에 의거 정리 추진.

4. 벤치마킹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

-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노력 강화
 - 체납정리 우수사례 도입 및 적용
 - 벤치마킹을 위한 타 시,군 징수사례 출장확인

5.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액의 결손처분

- 결손처분 대상(지방세법 제30조의 3 ①, 동 시행령 제14조)
 - 체납자의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국세의 결손 등
 - 자동차의 도난, 사실상 폐차 등이 확인된 자동차에 대한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체납세
-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실익없는자 과감히 결손 처분(지방세법 제30조의3 ②)
 - 결손처분후 재산 발견시에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 후 조세채권 확보

IV. 행정사항

- 도·시합동 특별 체납정리팀 명단 제출 : '06.1.16까지

시군명	소속	직	성명	연락처			성별
				E-mail주소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계							
:							
:							

- 체납자 개인별 체납사유분석 : 3월중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상반기 : '06. 4. 1 ~ 6. 30 (3개월간)

- 하반기 : '06.08.01 ~ 09.30 (2개월간)

'06.11.01 ~ 12.31 (2개월간)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세정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 결손처분 과다발생		○ 체납자에 대한 독촉 또는 납입최고, 교부청구, 압류, 납세추적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 대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30조의2에 의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 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권을 확보하기 바람.		○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종결, 무재산, 행불, 소멸시효 등 재산이 없는자에게 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며, ○ 결손처분후 향후 5년간 소멸시효 될때 까지 결손처분 사후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 년2회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징수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 결손처분시 결손대상자의 재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세원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 년도</th> <th colspan="2">결손총액</th> <th rowspan="2">체 납 처 분 증 결 지</th> <th rowspan="2">체 납 처 분 중 지</th> <th rowspan="2">행 불 무 재 산</th> <th rowspan="2">시 효 소 멸</th> <th rowspan="2">부 분 결 손</th> </tr> <tr> <th>건 수</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259</td> <td>1,054,380</td> <td>92,705</td> <td>-</td> <td>528,049</td> <td>12,863</td> <td>420,763</td> </tr> <tr> <td>2004</td> <td>910</td> <td>484,032</td> <td>64,953</td> <td>-</td> <td>408,855</td> <td>10,224</td> <td>-</td> </tr> <tr> <td>2005</td> <td>349</td> <td>570,348</td> <td>27,752</td> <td>-</td> <td>119,194</td> <td>2,639</td> <td>420,763</td> </tr> </tbody> </table>		구분 년도	결손총액		체 납 처 분 증 결 지	체 납 처 분 중 지	행 불 무 재 산	시 효 소 멸	부 분 결 손	건 수	금 액	계	1,259	1,054,380	92,705	-	528,049	12,863	420,763	2004	910	484,032	64,953	-	408,855	10,224	-	2005	349	570,348	27,752	-	119,194	2,639	420,763					
구분 년도	결손총액		체 납 처 분 증 결 지	체 납 처 분 중 지						행 불 무 재 산	시 효 소 멸	부 분 결 손																												
	건 수	금 액																																						
계	1,259	1,054,380	92,705	-	528,049	12,863	420,763																																	
2004	910	484,032	64,953	-	408,855	10,224	-																																	
2005	349	570,348	27,752	-	119,194	2,639	420,763																																	
•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결손처분으로 징수권을 포기할수 있으나, 체납자관리를 소홀히 하여 매년 4~5억 정도씩 과다하게 결손처분하여 세수가 결손되고있음.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세정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일반예금 잔고 과다보유 ('04. 11. 1 ~ 12. 30 .52일간)</p> <table border="1" data-bbox="206 525 683 664"> <tr> <td>50억이상</td> <td>30억이상</td> <td>20억이상</td> <td>10억이상</td> <td>10억이하</td> </tr> <tr> <td>6일</td> <td>9일</td> <td>14일</td> <td>18일</td> <td>5일</td> </tr> </table> <p>• '04. 11. 1~12. 31까지 공금잔액을 살펴보면 20억이상 소유일이 52일중 29일이 되는등 공금을 이자소득이 높은 환매조건부채권, 신종적립신탁,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예금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자수입 증대에 배치되게 관리하고 있음.</p>	50억이상	30억이상	20억이상	10억이상	10억이하	6일	9일	14일	18일	5일	<p>○ 자금수요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일반예금 잔고를 최소하고 이율이 높은 환매조건부채권, 신종적립신탁,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률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p>	<p>○ 제천시 금고업무 취급계약 제6조의 보관현금의 운용은 자금 지급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고가 취급하는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 신종적립식 신탁등 고율의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률을 증대하고 있으나 .</p> <p>○ 연말 자금수요가 1일 평균 20억원 정도이고,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이 은행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금되므로 → 일반예금으로 과다하게 보유되었음.</p> <p>○ 금후 고율의 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 우대금리 0.3%를 적극활용하고 자금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음</p>	<p>“완결”</p>
50억이상	30억이상	20억이상	10억이상	10억이하									
6일	9일	14일	18일	5일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계과]

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천시청 청사 관리운영 - 보유면적 : 22,368㎡ - 적정면적 : 22,034㎡ ⇒ 적정면적 대비 보유면적의 차이인 △334백만원의 패널티 받음 	<p>○ 200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에는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패널티는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 지방청사 면적에 대하여 적정면적 대비 보유면적이 334㎡(101평) 증가된 사항으로 현재 제천시의 경우 타 시군(불임 내역)보다 양호한 실정이나, 적정면적 대비 부서별로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임</p> <p>○ 추후 중축계획(읍·면·동 포함)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지방세 교부세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완결”</p>

발 간 등 루 번 호
11-1310000-000188-10

제정조정-07-2005-26

200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행정자치부

마) 지방정부(면적)관리 운영

단체별	인구수 (명)	공무원수 (명)	공공경시면적(㎡)			비정규 상근인력 (명)	표준행정수요 보유면적 기준(P) 면적면적 기준(B)	지체노력 반영액 (B-A)	(단위:백만원)	비고
			보유면적	적정면적	증감					
합계	20,982,559	61,024	2,304,343	2,171,525	-132,818	18,332	2,028,092	2,003,571	-24,518	
경기도	1,034,266	2,296	61,496	63,646	2,150	813	70,070	70,467	397	
성주	967,437	2,204	66,858	60,922	-5,996	571	60,858	59,762	-1,096	
의정부	396,168	861	23,619	22,768	-851	162	21,472	21,315	-157	
인천	617,419	1,556	79,651	42,310	-37,341	499	52,144	45,250	-6,894	
마포구	849,295	1,969	87,667	54,138	-33,529	600	62,763	56,573	-6,190	
관악구	335,295	901	25,130	23,876	-1,254	189	22,688	22,457	-231	
성동구	367,593	1,548	36,434	42,082	5,648	283	34,443	35,486	1,043	
성북구	75,321	452	10,574	11,595	1,021	130	11,872	12,060	188	
강북구	657,215	1,537	29,011	41,769	12,758	477	42,089	44,444	2,355	
성인	672,838	1,856	60,830	50,889	-9,941	552	55,165	53,930	-1,835	
성우	69,916	457	14,453	11,729	-2,724	152	13,403	12,900	-503	
성구	193,515	589	18,528	15,299	-3,229	156	16,383	15,787	-596	
성남	406,915	1,112	31,531	29,762	-1,769	231	27,863	27,536	-327	
성의	119,726	432	18,001	11,058	-6,943	107	12,523	11,241	-1,282	
성시	372,123	775	26,948	20,392	-6,556	245	24,163	22,953	-1,210	
성기	274,486	658	20,007	17,180	-2,827	191	19,141	18,619	-522	
성화	143,063	438	16,504	11,219	-5,285	130	13,307	12,331	-976	
성하	128,298	542	20,216	14,023	-6,193	139	15,184	14,040	-1,143	
성화	592,495	1,210	49,192	32,514	-16,678	379	38,742	35,663	-3,079	
성화	238,730	929	23,275	24,654	1,379	128	19,700	19,955	255	
성화	190,812	813	20,821	21,440	619	147	18,535	18,650	114	
성화	152,115	761	20,680	29,008	-874	48	14,131	14,007	-124	
성화	206,531	685	20,683	17,919	-2,764	163	18,018	17,508	-510	
성화	243,331	938	44,901	24,904	-19,997	213	26,923	23,231	-3,692	
성화	196,645	682	15,916	17,837	1,921	199	18,361	18,715	355	
성화	149,898	598	23,989	15,543	-8,446	100	15,121	13,561	-1,559	
성화	149,559	724	23,012	18,989	-4,023	113	16,582	15,840	-743	
전체	10,001,005	27,525	889,927	738,464	-151,463	7,117	761,643	733,680	-27,962	
강원	253,570	1,337	29,253	36,096	6,843	290	30,626	31,889	1,263	
충주	281,547	1,238	30,997	33,302	2,305	135	24,545	24,970	426	
충주	228,529	1,193	50,942	32,036	-18,906	287	33,011	29,521	-3,490	
충주	101,410	591	13,518	15,353	1,835	147	14,508	14,847	339	
충주	53,889	562	12,392	14,565	2,173	198	15,570	15,971	401	
충주	88,559	529	14,277	13,671	-606	143	13,837	13,726	-112	
충주	75,256	793	24,143	20,888	-3,255	160	18,637	18,037	-601	
전체	1,082,760	6,243	175,522	165,911	-9,611	1,360	150,735	148,980	-1,774	
세종	619,098	1,655	47,876	45,133	-2,743	511	47,647	47,140	-506	
세종	208,603	1,235	48,296	33,218	-15,078	283	32,627	29,843	-2,784	
세종	140,020	953	27,132	25,321	-1,811	194	22,368	22,034	-334	
전체	967,721	3,843	123,304	103,672	-19,632	988	102,642	99,018	-3,624	

□ 산정공식

• 지체노력 반영액

▪ 적정면적기준 표준행정수요 - 보유면적기준 표준행정수요

▪ 적정공공경시면적 산정공식

$$\ln Y_t = 2.956268 + 1.047163/\ln G_t$$

* G_t : 공무원수(국가+지방)

▪ 표준행정수요 산정공식

$$Y_t = (456.046841 + 0.007155P + 9.559467G_t + 0.190330C_{B_1} + 37.772126C_{B_2}) \times \omega(0.970)$$

* P: 인구수, G_t: 공무원수(국가+지방), C_{B_1}: 공공경시보유면적, C_{B_2}: 비정규상근인력정수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계과】

지적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부실시공(납품)불량업체에 대한 패널티 적용 · 준공지연(2~5일), 하자발생 등 33개 부실시공, 불량업체에 대한 패널티 적용사례는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만 배제하고 있어 일반 수의견적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패널티 적용이 필요함</p>	<p>○ 부실시공, 불량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패널티 적용을 강화(수의 견적 입찰참여 배제등)하고 우수업체 실적기준 등을 마련 인센티브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p>	<p>○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사항으로 준공지연이나 하자 발생 업체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수의견적 입찰참여 배제는 계약법상 불가하며,</p> <p>○ 2006년 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공사(물품, 용역 5백만원 이상)는 지정정보 처리장치(G2b)에 의하여 견적입찰로 집행(시행령 제30조)해야 함으로 인센티브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설정임.</p> <p>○ 지방계약법에 의한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연 2회 하자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 하겠음</p>	<p>“완결”</p>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회계과]

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input type="radio"/> 보건소 청사 증축요망 ·여건변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사가 협소하니 증축하여 주시기 바람	<input type="radio"/>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축기능 여부를 보건소에 통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input type="radio"/> 당초 신축공사의 구조계산서 검토결과 현재 2층 건축물로 증축예정을 고려하여 구조 계산 된 건축물이므로 3층 증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완결”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건위생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노인전문병원 사업추진 소홀 · 노인성질환의 사전예방, 치료, 요양등을 위하여 9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3,600백만원을 확보하고 대상지를 공모하였으며, 사업개요에 따라 045.2의료법인 용포의료재단과 전문병원 신축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후 장비비 748,000천원(당초 448,000천원), 농지조성비 39,900천원, 상수도시설비 253,000천원, 전기인입공사비 27,940천원 등 추가예산이 계속 증가되어 당초계획보다 629,765천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 시비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등 당초부터 사업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부지선정시 진입로 조건이나 대지 조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진입로 개설비, 농지조성비, 상수도시설비등의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임.</p>	<p>○ 시비부담이 당초계획 수립시보다 6억원 이상 추가 소요되는 만큼 좋은 환경의 내부시설, 기자재, 의료장비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공사등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장비 구입시는 전문가로 하여금 검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p>	<p>○ 건축 및 토목공사 시 하자 발생 염려 때문에 공사감리 외에 웅포의료재단측에서 현장공사감독관을 주재시켜 감독하였을 뿐 아니라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수시 출장하여 공사 감독에 전력하였으며 병원내부시설도 질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타 병원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환자들에게 최대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고려하였음.</p> <p>○ 또한 금년도 구입 설치할 행정 및 의료장비도 최고의 장비가 구입설치 될 수 있도록 검수시 최선을 다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행정요원 및 의료종사원에게 편의를 줌으로써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것임.</p>	완결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건강관리과】

지적·건의사항	조치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비고																												
<p>○ 위원회운영 부적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실과</th><th>위 원 회 명</th><th>위원수</th><th>운영실적</th></tr> </thead> <tbody> <tr> <td>기획</td><td>규제개혁위원회</td><td>12</td><td>04-0회(05-0회)</td></tr> <tr> <td>기획</td><td>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td><td>9</td><td>04-0회(05-0회)</td></tr> <tr> <td>기획</td><td>공직자윤리위원회</td><td>5</td><td>04-0회(05-0회)</td></tr> <tr> <td>복지</td><td>지방청소년위원회</td><td>15</td><td>없음</td></tr> <tr> <td>세정</td><td>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td><td>7</td><td>04-0회(05-0회)</td></tr> <tr> <td colspan="4"> </td></tr> </tbody> </table> <p>•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의를 1년동안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등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p>	실과	위 원 회 명	위원수	운영실적	기획	규제개혁위원회	12	04-0회(05-0회)	기획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9	04-0회(05-0회)	기획	공직자윤리위원회	5	04-0회(05-0회)	복지	지방청소년위원회	15	없음	세정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7	04-0회(05-0회)					<p>○ 1년 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유사위원회와 통·폐합 또는 폐지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p>	<p>○ 2005년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5. 12. 19 13:00 - 장 소 : 제천시보건소 보건교육실</p> <p>○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운영도록 되어 있으며 년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서를 제출</p> <p>○ 2006년 제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 확대</p>	<p>“완결”</p>
실과	위 원 회 명	위원수	운영실적																												
기획	규제개혁위원회	12	04-0회(05-0회)																												
기획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9	04-0회(05-0회)																												
기획	공직자윤리위원회	5	04-0회(05-0회)																												
복지	지방청소년위원회	15	없음																												
세정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7	04-0회(05-0회)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지적·건의사항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풍하키장 관리 및 하자 보수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풍하키장의 본부석 크랙으로 인하여 지하 락카룸 누수발생, 텍스 접착불량으로 인한 탈착, 벽면 크랙발생(미장부분) 등의 하자가 계속(매년)으로 발생되고 있음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석 크랙으로 인한 지하락카 룸 누수발생 및 텍스 접착불량으로 인한 탈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 크랙 발생(미장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설계, 감리, 감독 부문등 전부문에 걸쳐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아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근본 대책을 강구하여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체육과의 토목담당자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의 건축담당자 그리고 시공업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중”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지적·건의사항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밭수영장 관리조례 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지 솔밭수영장의 이용률 저하 및 노후화로 수영장 기능을 상실하여 2003. 3. 12일 용도폐지 하였음에도 솔밭수영장 관리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를 요구한 다음에 조례폐지 절차를 이행하는 등 솔밭수영장 관리조례 운영에 정을 기하자 못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함 ○ 2003. 03. 12 솔밭수영장이 용도폐지 되었고(제천시정조정위원회 의결) ○ 2005. 07. 21 솔밭수영장 철거공사가 완료되었고, 이에 2005. 12. 23 제천시 조례 제727호로 「제천시솔밭수영장 설치운영조례」가 폐지됨 	<p>“완결”</p>

지적사항 ·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식

(부서명 : 시립도서관)

지적·건의사항	조치·유급사항	조치 결과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병도서관 기능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562평의 의병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의병관련 전용면적은 2층 3실 68.39평으로 기존의병자료실 45평보다 30평 더 확보하는 하는데 그쳐 의병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목적에 맡도록 의병도서와 의병연구실, 의병전시실, 의병체험관 등 도서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병도서관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면적 150평 전체를 의병특화 집중공간으로 배정하여 의병자료실, 기증물품, 열람학습실, 의병기획전시실로 사용할 예정이며, 또한 지하 다목적실(50평)은 의병관련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병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임 	완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상징조형물 건립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건축물을 건축시 건축물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의병도서관도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병도서관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관련설과와 신중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병도서관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는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물 전면 좌측의 원통 부분을 의병이 봉기하는 횃불을 상징하도록 설계하여 건축하고 있음 	완결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무서명 : 교동)

제	제	제
동사무소앞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새벽에도 운동기구를 대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체육공원에 운동기구를 무인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배구공 외 4종 16점의 운동용품을 확보하여 사용을 원하는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는 운동기구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음
소화기 위탁판매에 따른 역기능에 대하여 검토 요망	소화기 위탁판매는 주민 또는 상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재검토 시행하기 바람	소화기 위탁판매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 중앙의림명동)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직원 인력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청소 및 물품준비등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청소 및 준비물 관리 등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추진 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구교실, 서예교실, 수자침교실 회장 및 총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취미교실별 물품준비 및 청소를 자율적 실시도록 협의 완료 	완결